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운용에 관한 지침중 개정

공업진흥청 고시 제'93-212호
개정 1993. 6. 15

공업진흥청에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운용에 관한 지침중 생산개시보고 및 생산실적보고를 삭제하는 등 개정을 하였기에 이를 업계관계자 여러분께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편 집 자

제5조의2(생산개시보고) 및 제19조(생산실적보고)를 삭제한다.

[별표 1]전기용품 공장검사 평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심사항목 제5항의 비고란에 “③외부 품질경영 교육기관이라함은 한국공업표준협회,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,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.”를 “③외부 품질경영교육기관이라함은 한국공업표준협회,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를 말한다. 다암, 외국인 제조업등록업체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로 조정하고 「“⑤교육시기가 맞지않아 경영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은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접수증으로 갈을할 수 있다.”를 추가하고」 심사항목 제16항의 비고란에 “③제조업등록시 검

사설비의 교정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신청한 접수증으로 갈을할 수 있다.”를 추가한다.

별표서식 3.생산개시보고서와 별표서식 4.전기용품 생산실적보고서를 삭제한다.

[별표 4]전기용품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5]구조 및 재료의 판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배선기구류에 “[××] 멀티탭에 과전류보호장치가 없는것”을 추가한다.

부 칙

시행일 :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.